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 (통계조사관) 채용 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통계조사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고용노동통계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 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 예정 기간	채용인원	
			일반	장애인
통계조사관 (기간제)	조사관리지원 2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 관련 조사지원 (분류검토, 표본사업체 확인, 조사표 정리, 방문· 일괄조사, 우편발송 등)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6. 7. 1. ~ 12. 4.	1명	-

※ 직무내용은 <붙임 1> 직무설명서참고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중복 지원은 불가

II 응시자격

구분	주요내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우대사항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및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장애인(장애인 전형 제외) · 직무 관련 활용 경험 및 자격보유자(통계 또는 전산 관련)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지원 가능, 장애인의 일반전형 지원은 가능(가점부여)하나 전형별 중복 지원은 불가

Ⅲ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 내외 범위에서 선발



면접전형

- 통계조사관으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시	비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6. 6. 9.(화) ~ 2026. 6. 19.(금) 10: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NCS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 ②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 ③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입력 제출 •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6>서식 => 자필 서명한 스캔본을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에 첨부하여 제출 • 접수방법: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접수 마감일 10:00까지 수신된 지원서만 유효) ※ 우편, 이메일, 방문 제출 등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24.(수)(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6. 6. 25.(목)(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능력 면접, 품성, 가치관, 조직 적응력 등 평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29.(월)(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공지

IV 우대사항

○ 우대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부 및 타 통계조사 경력자 - 통계조사관련 경력 기재시, 조사별로 재직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불명확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또는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조사분석사,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 MOS, ITQ 등 과목이 구분되는 자격증은 해당 과목 명시

○ 가점 부여 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 부여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법정가점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5점) 또는 10%(10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td> </tr> <tr> <td>사회형평 가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3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 부여 내용	법정가점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5점) 또는 10%(10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사회형평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3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항목	가점 부여 내용					
법정가점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5점) 또는 10%(10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사회형평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3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V 접수서류

- 접수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 e-채용마당](#)』

고용24(<http://www.work24.go.kr>)개인회원 로그인 → 상단『채용정보』→『e-채용마당』 → 대전.충청 → 대전고용노동청 (기간제 통계조사관) → 하단의 『e-채용마당 입사지원』

- ※ 원서접수는 고용24 『e-채용마당』을 통해서만 가능 (e-메일, 우편, 방문, 팩스 접수 불가)

제출 서류	대 상
NCS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고용24 e-채용마당』에 직접 작성 제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6] ※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스캔 첨부 제출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대상자 1부(해당자)	
통계 또는 전산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 ※ NCS 직무능력기반 지원서는 <붙임2> 양식 참고
-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VI 근무조건

- 채용예정기간
(조사관리지원) '26. 7. 1. ~ 12. 4.
- 보수수준 : 일급 78,560원, 식대(월 기준 160,000원, 만근 기준),명절상여금 1,228,830원
※ 출장 시 출장비 별도 지급
* 식대는 월 기준액 160,000원을 계약기간 비례하여 지급하며, 결근 시 감액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통계조사관)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입사일 기준) 1주일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토요일 무급)
- 근무장소 : 대전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노동시장분석팀(충청지방우정청 4층)
- 근무형태 : 근무상황에 따라 유연근무제 등 활용 가능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훈령 제347호)」에 따름

<채용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VIII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5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며, 최종 채용 합격자의 서류 및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반환방법은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되어 특수취급우편물 발송에 대해 「우편법」 제19조에 따라 정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 반환청구되지 않은 서류 및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상기 청구기한까지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직무 및 채용 관련 문의: 042-470-8304

채용분야	통계 조사원	분류 체계	대분류	02.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01. 기획사무
			소분류	03. 마케팅
			세분류	03. 통계조사(능력단위 미개발 영역 포함)
기관 주요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역의 사업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보험 및 취업알선 사업과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노동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임.			
주요업무	기존 기간제 통계조사관 수행 2종* 조사에 한정하여 조사지원 업무 수행 * ①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②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요업무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분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등 - 표본사업체 확인(표본대체 포함) - 조사표 등 관련 서류 정리 후 담당공무원 인계 - 방문조사 및 일괄조사(표본 할당 가능) - 우편발송 및 팩스 · 전자우편 관리 등 			
전형방법	채용공고문 참고			
일반요건	연령	무관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 조사 용어에 대한 이해, 산업 및 직업 분류표 이해, 무응답 처리방법, 이상치 진단방법			
필요기술	○ 통계조사표에 대한 이해, 스프레드시트(엑셀) 활용 능력, 현장 방문조사 능력, 전화 대응 능력, 개방형 응답 범주화 능력, 이상치 판별 및 처리 능력, 원 자료 검토 능력, 입력시스템 사용 능력			
직무수행태도	○ 적극적인 학습의지, 업무처리에 대한 꼼꼼한 태도,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태도, 매너를 준수하려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객관적·균형적 태도, 조사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 상호 독립적이고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범주화하려는 태도, 대량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는 태도			
필요자격	통계조사관련 경력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관리,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 laborstat.molab.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통계 			

붙임2

NCS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채용분야

통계조사관(기간제)

모집분야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대상(5%)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대상(10%)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2.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직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엑셀 및 시스템 입력 등 자료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기입해 하고 기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해 주십시오.

고용형태	회사명	부서명/ 직급	재직기간 (표기법:2025.1.1.)		직위/역할	담당업무	이직사유
			시작일	종료일			

3. 직무관련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 명확한 증빙이 가능한 부분만 기재하고 공란 등으로 정확한 내용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자격증명	발급기관	등록번호	취득일자

-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극적 문제해결] 지금까지의 경험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 노력으로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2.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자세]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에 대해서 역할과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3. [의사소통능력] 그 동안의 경험 중 타인 혹은 타 조직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성과가 잘 도출된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4.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을 첨부파일에 '기타'로 선택하여 등록

붙임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수 집 정 보
입사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 취업보호·지원대상 여부, 장애 여부, 저소득층 여부 ○ 직무 관련 경험·경력·자격 사항 ○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전형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다문화가족 관련 증명서류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위 입사지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경력증명서 등 위 서류전형 합격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중